



새 법령

new laws
and
ordinances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23호, 2019. 3. 1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청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그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5954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그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

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의결의 경우에는 그 징계의결 기한을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성 관련 비위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3. 5.] [대통령령 제29602호, 2019. 3. 5.,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파산의 경우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여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법원은 개

인인 채무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바,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 한도를 900만원에서 1천110만원으로 증액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재화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3. 5.] [대통령령 제29604호, 2019. 3. 5.,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해당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3. 5.] [대법원규칙 제2836호, 2019. 3. 5.,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법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칙 규정형식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함

-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칙 내용 중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기존 예규에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적용제외 관련하여 그 근거규정을 규칙에 신설하며, 규칙상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의 위임 취지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령 체계정합성에 맞도록 정비함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원행정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변경하고,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함

2. 주요내용

- 법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제5조제1항)
- 법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제5조제2항)
-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이,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함 (제6조제3항)

- 법원의 재판,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등의 경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예규규정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7조제3항 신설)
- 법원의 경우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별도로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취지를 살려 관련 규정들을 체계정합성에 맞도록 수정 및 삭제함(제9조)
- 별표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목을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서 ‘개인정보파일 상세내역서’로 변경함(별표)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나 일정금액의 급여채권 또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인상된 소비자물가·최저생활수준 등 변화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생계비와 급여, 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를 185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시행 2019. 3. 5.] [대법원규칙 제2837호, 2019. 3. 5.,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의 조직 및 구조를 개편하고 관련 사무분장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개정(대법원규칙 제2826호, 2019. 1. 29. 공포, 2019. 2. 25. 시행)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중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과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될 윤리감사제1담당관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로 추가하고자 함

○ 매월 1일에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사람의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정보제공동의서 제출기한 관련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824호, 2017. 1. 3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이 담당하던 것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과 윤리감사제1담당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함(제5조제2항)

- 제14조제1항제1호에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함(제14조제1항제1호)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27.] [국방부령 제978호, 2019. 2. 2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공기업 2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준정부기관 2개 및 도봉문화재단 등 비영리기관 2개를 추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 시 지방병무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서류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를 추가하며, 병역증서 발급 신청서에 전투경찰대원 및 의무경찰대원 등 전환복무한 사람의 복무분야 및 계급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2019. 3. 12.] [대통령령 제29608호, 2019. 3. 1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외무공무원은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임용되지 않은 외무공무원 3등급 채용후보자는 별도 사유가 없으면 채용하도록 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외무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설정하고,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외교부 등에 두는 직위의 명칭 등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제11조의4제4항 신설)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근무기간 5년 외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외교 등 특수 분야의 인재 채용 방식의 전환(현행 제12조제4항·제5항 및 별표 2의2 삭제, 제12조의4제2항)

지역외교 등 특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채용시험이 경력경쟁채용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채용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다. 외무공무원 3등급 채용후보자의 임용(제12조의2제3항 신설)

외무공무원 3등급 채용후보자 중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초과 정원을 인정함.

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외무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 설정(제26조제3항 신설)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최초 채용된 외무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최초 임용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실·국 등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함.

마.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확대(제43조제2항)

현재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의 외무공무원과 3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나, 앞으로는 3명 이내의 외무공무원과 3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06호, 2019. 3. 12.,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등을 물납한 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물납 증권의 저가 매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

산법」이 개정(법률 제15425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물납 증권의 저가 매수 금지 대상을 물납한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정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사용료를 또는 대부료를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인하하고, 일반재산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5년 또는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1.] [기획재정부령 제708호, 2019. 2. 1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대리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